중복가입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이○○ 입니다.
중복가입된 전문분야연구회의 탈퇴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공지글을 올립니다.

법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분야연구회는 재판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재판업무의 충실화, 효율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2000년도에 창설되었고, 법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아래 표와 같이 15개의 연구회가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복 가입 불가	중복 가입 가능
국제거래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기업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민사집행법연구회 언론법연구회, 의료법연구회, 조세법연구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환경법연구회 ※ 단, 현재 소속 중인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는 중복가입 가능	사법정보화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헌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

전문분야연구회 가입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한편 경비보조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에 근거하여 전문분야연구회의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사법정보화연구회,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와 현재 소속 중인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는 예외) 현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하신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번거로우시겠지만, 연구회에 복수로 가입되어 있으신 법관 여러분께서는 2017. 2. 20.까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하나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하심으로써 중복가입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04년에도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가 시행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사법정보화연구회,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와 현재 소속 중인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방법에 관하여는 첨부해 드리는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20. 이후에도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규의 취지에 따라 가장 먼저 가입하셨던 연구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그 뒤에 가입하신 연구회에서는 탈퇴하시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계획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복가입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법부의 귀중한 자산인 전문분야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읽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이○○ 올림